

2021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 현황집

발간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보도된 어린이집 사건들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으나 보육 현장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된 한해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 이후 다양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을 경험해보면서 다각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예방가능하다”고 분석되었던 사건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학대 발생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는 아이들, 부모님, 그리고 종사하는 보육교직원, 어린이집들이 이러한 일을 마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던 와중 가장 먼저 우리가 맡아왔었던 사건들을 한번 분석해보는 것이 아동보호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울산 내에서 발생하였던 5년간의 어린이집 사건들을 취합하여 통계화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지자체, 경찰청, 육아종합지원센터, 학계 교수님 등 전문가분들의 지문을 받아 다양한 제언점들을 들어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현황집이 발간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 한 권의 현황집이 당장의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다양한 곳에서 울산만의 예방 대책과 후속 연구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으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향후에도 울산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윤 채 원

2021년 울산 지역 아동학대의심신고는 전년도에 비하여 2배를 훨씬 웃도는 상황입니다.(2020년 1,465건/ 2021년 11월 말 2,931건). 최근에는 유난히도 울산 지역 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보도되어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를 위해 다방면의 지원에 주력하느라 바쁜 한 해였습니다.

아동학대의 87.4%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통계적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이라는 가정을 대신하는 보호 장소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영유아라는 가장 취약한 연령의 아동에게 발생되는 아동학대만큼 더욱 세심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육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충분한 돌봄과 교육을 하고 계시는 많은 보육교사들이 일부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위축되고 경직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같은 아동복지를 실천하는 현장가로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2020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근본적인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고, 어린이집에서 일차적으로 대응한 방식의 형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울산지역 내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약5년간의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본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 현황집’이 어린이집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의 모든 돌봄기관의 관련인 모두가 ‘아동복지실천가’ 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임을 인지하도록 돕고, 아동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를 기대합니다.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강 진 희

I 서론

배경 및 목적

- 울산지역 2016~2020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황 분석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추이를 확인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특성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향후 대응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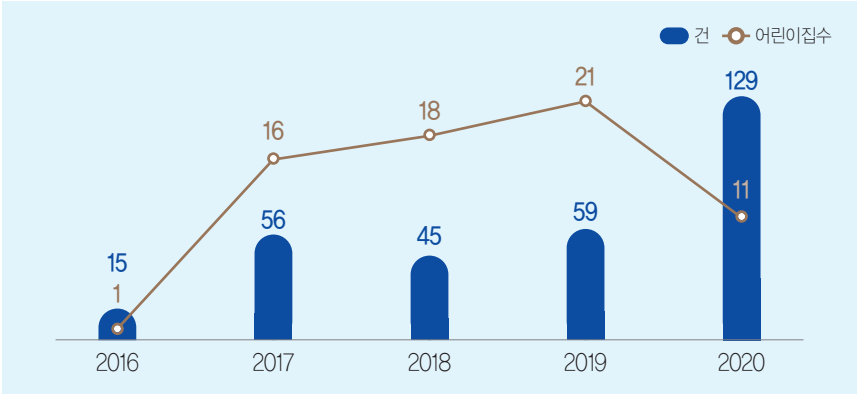
- 대상
 - 울산 지역 2016~2020 아동학대 신고된 어린이집 67곳, 304건
- 기간
 -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 사례집 발간 사업계획 : 2020.10~12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자료 취합 및 분석 : 2021.01~09
 - 사례분석 토대로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 수렴 : 2021.10~11
 - 현황집 발간 : 2021.12.

항목 및 분석방법

- 항목
 - 신고연도, 신고자 유형, 신고과정, 지역, 어린이집 유형, 피해 의심아동 성별과 연령, 행위의심자 성별과 연령, 행위외심자 총경력과 현원 경력, 발생원인과 대처, 판단결과와 유형, 판단사유와 미판단사유, 조치유형과 사건처리결과, 심리치료 진행여부 등 총 17개 항목
- 분석방법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자료 추출
 - 항목별 통계 분석

II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황분석 결과

1 연도별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건 및 어린이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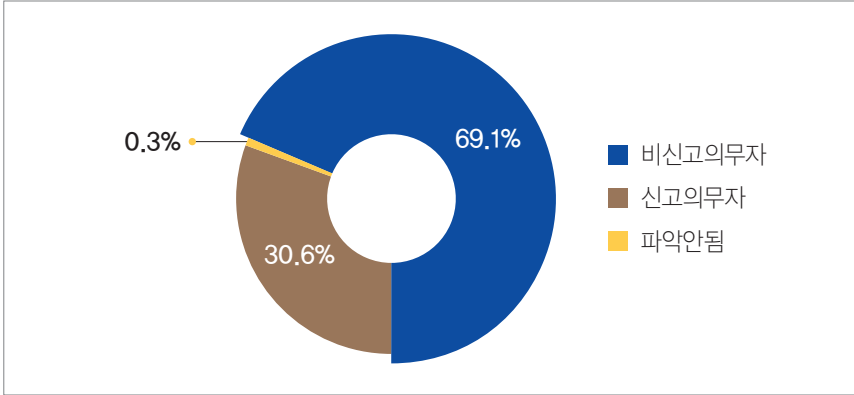
(단위: 건, %, 개소)

연도	건(백분율)	어린이집수
2016	15(5.0)	1
2017	56(18.4)	16
2018	45(14.8)	18
2019	59(19.4)	21
2020	129(42.4)	11
소계	304(100)	67

[표 1 연도별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건 및 어린이집 수]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304건이다. 2016년 15건(5.0%), 2017년 56건(18.4%), 2018년 45건(14.8%), 2019년 59건(19.4%), 2020년 129건(42.4%)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된 어린이집수는 2016년 1개소, 2017년 16개소, 2018년 18개소, 2019년 21개소, 2020년 11개소로 나타났다.

2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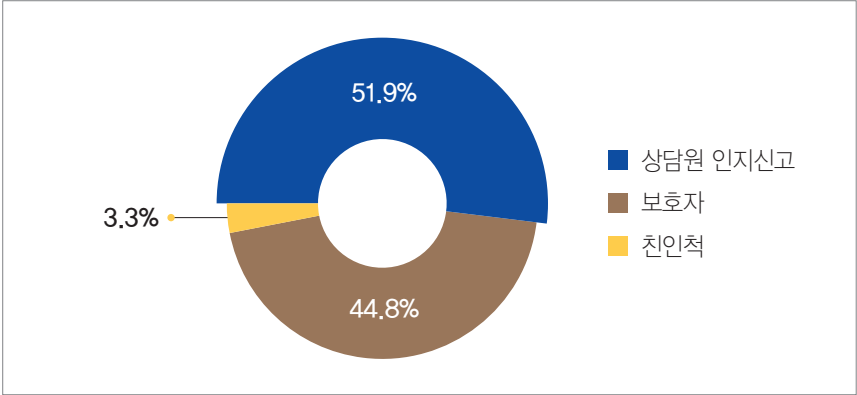
신고자 유형	건	백분율
비신고의무자	210	69.1
신고의무자	93	30.6
파악안됨	1	0.3
소계	304	100.0

[표 2 신고자 유형]

- 아동학대 의심신고자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된다.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자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건의 신고자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비신고의무자로 210건(69.1%)이며, 신고의무자는 93건(30.6%)로 나타났다.¹⁾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의 경우 2020.10.01 부터 신고의무자로 변경됨.

2-1 비신고의무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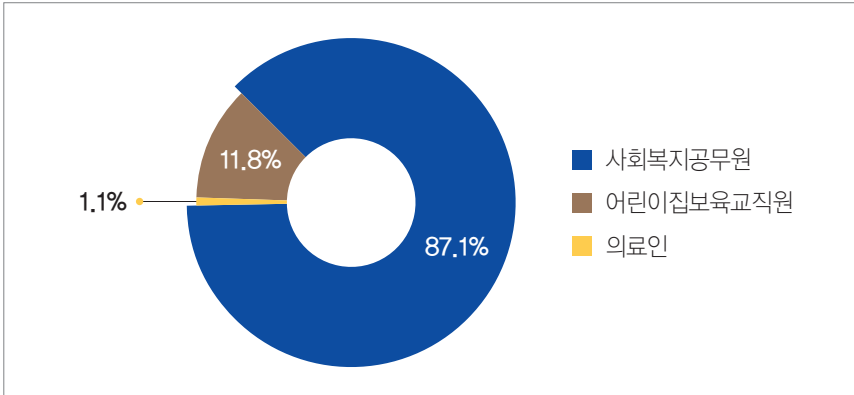
(단위: 건, %)

비신고의무자 유형	건	백분율
상담원 인지신고	109	51.9
보호자	94	44.8
친인척	7	3.3
소계	210	100.0

[표 2-1 비신고의무자 유형]

-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주로 신고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신고된 아동 외에 추가적으로 피해아동을 발견하여 신고 되는 경우가 많아 상담원 인지신고가 109건(51.9%), 아동의 말과 행동을 토대로 부모가 학대를 의심하여 신고하는 경우로 보호자 신고 94건(44.8%)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중 아동 본인이 신고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에는 아동 본인이 신고하는 사례는 0건으로 아동 연령의 특성상 위험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영유아 피해아동의 특성으로 파악된다.

2-2 신고의무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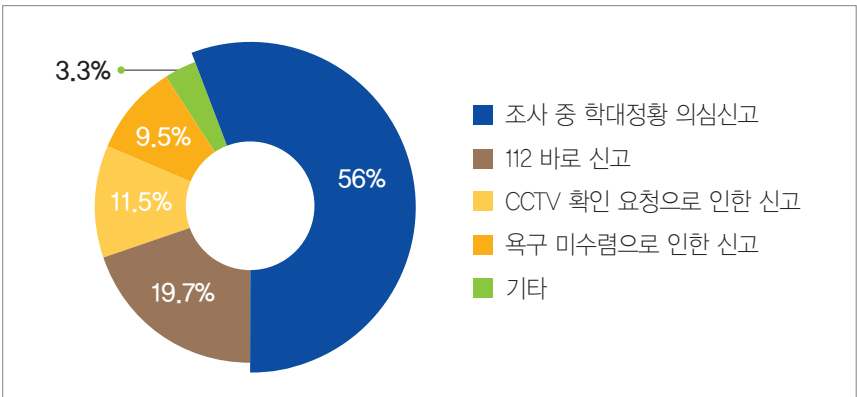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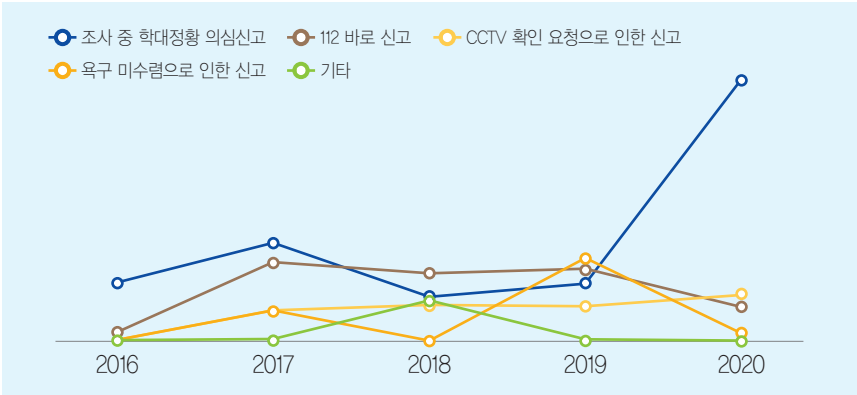
(단위: 건, %)

신고의무자 유형	건	백분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1	11,8
의료인	1	1,1
사회복지 공무원	81	87,1
소계	93	100,0

[표 2-2 신고의무자 유형]

- 신고의무자 유형 중 해당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1건(11,8%), 의료인 1건(1,1%), 사회복지 공무원 81건(87,1%)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월 이후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 전환으로 이후 발생 건의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공무원 비율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3 연도별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과정



(단위: 건,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	백분율
조사 중 학대정황 의심신고	14	21	11	14	110	170	56.0%
112 바로 신고	1	19	15	17	8	60	19.7%
CCTV 확인 요청으로 인한 신고	0	8	9	9	9	35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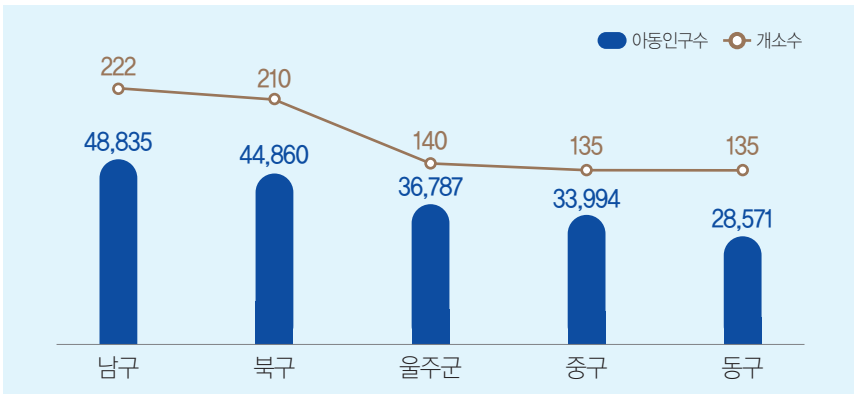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	백분율
육구 미수렴으로 인한 신고	0	8	0	19	9	29	9.5%
기타	0	0	10	0	0	10	3.3%
소계	15	56	45	59	129	30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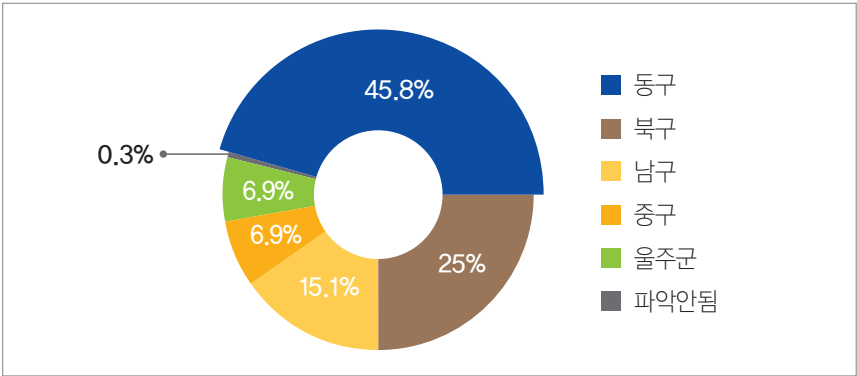
[표 3 연도별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과정]

-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는 조사 중 학대정황 의심으로 170건(56.0%), 112신고 60건 (19.7%) 순으로 나타났으며, CCTV확인 요청으로 인한 신고 35건(11.5%), 육구 미수렴으로 인한 신고는 29건(9.5%)로 나타났다.

‘조사 중 학대정황 의심’으로 신고는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인지접수 및 신고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CCTV확인 요청’이나 ‘육구 미수렴’의 경우, 아동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112로 신고가 이어지게 된 경우이다.

4 지역별 어린이집 신고 건





(단위: 개소,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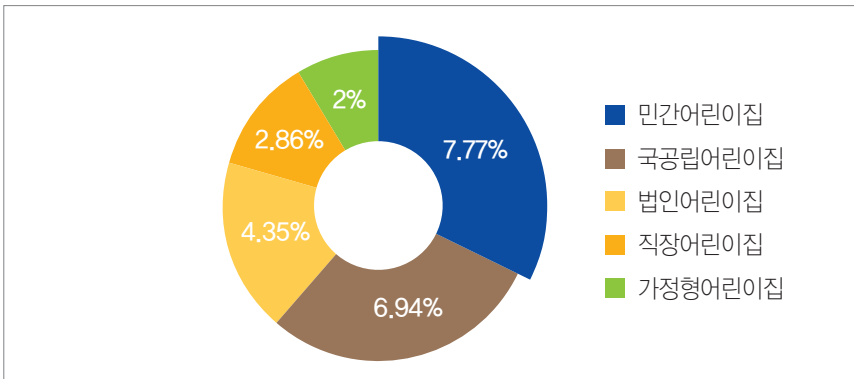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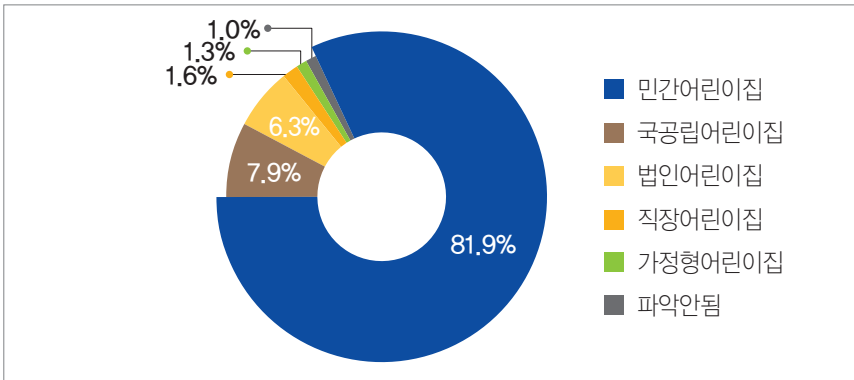
지역	어린이집 수					신고건	백분율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동구	1	2	6	2	2	13	139	45.8%
북구	0	5	2	7	2	16	76	25.0%
남구	0	5	5	8	2	20	46	15.1%
중구	0	4	1	0	1	6	21	6.9%
울주군	0	0	4	4	4	12	21	6.9%
파악안됨	0	0	0	0	0	0	1	0.3%
계	1	16	18	21	11	67	304	100%

[표 4 울산지역별 어린이집 신고건수]

- 울산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동구 139건(45.8%), 북구 76건(25.0%), 남구 46건(15.1%), 중구·울주군은 각각 21건(6.9%)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어린이집 발생 수로 보았을 시, 남구 20곳, 북구 16곳, 동구 13곳, 울주군 12곳, 중구 6곳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의 만18세 미만의 아동인구 수를 살펴보면(통계청) 남구(48,835명) - 북구(44,860명) - 울주군(36,787명) - 중구(33,994명) - 동구(28,571명) 순으로 아동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2021.통계청), 울산광역시 어린이집 현황(2020년 울산 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개소수는 2015년 934개소, 2016년 895개소, 2017년 881개소, 2018년 868개소, 2019년 842개소로 점차 감소추세이다. 2019년 어린이집 구군별 현황을 보면 남구(222개소)가 가장 많으며, 북구(210개소), 울주군(140개소), 중구(135개소), 동구(135개소)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개소수와 아동학대 발생 지역은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어린이집 유형



(단위: 건, 개소수,%)

어린이집 유형	아동학대 신고건수	어린이집 수	어린이집 개소수	개소수 대비 발생율
민간어린이집	249(81.9%)	32	412(48.9%)	7.77%
국공립어린이집	24(7.9%)	5	72(8.6%)	6.94%
법인어린이집	19(6.3%)	1	23(2.7%)	4.35%
직장어린이집	5(1.6%)	1	35(4.2%)	2.86%
가정형어린이집	4(1.3%)	6	300(35.6%)	2%
파악안됨	3(1.0%)	-	-	-
소계	304	45	8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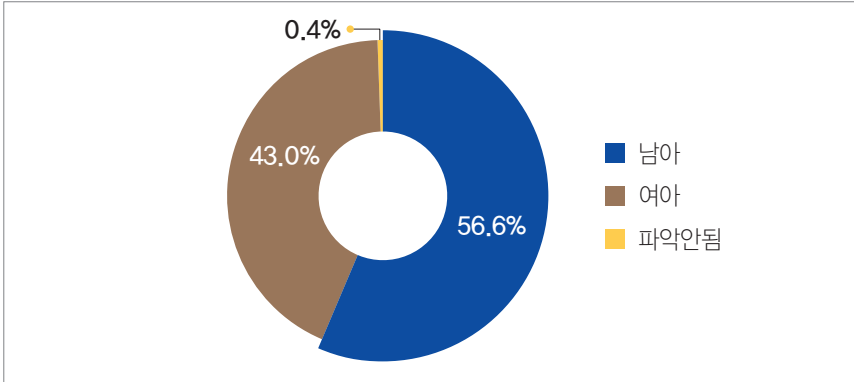
[표 5 어린이집 유형별 신고건 및 어린이집 수]

- 어린이집 유형으로 살펴보았을 시, 민간어린이집이 249건(81.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24건(7.9%), 법인어린이집 19건(6.3%), 직장어린이집 5건(1.6%), 가정형어린이집 4건(1.3%)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 시설수로 보았을 시, 민간어린이집 32곳, 가정형어린이집 6곳, 국공립 어린이집 5곳, 법인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은 각 1곳으로 나타났다.

2019년 어린이집 유형별 개소수를 보면 민간어린이집(412개소)로 가장 많고, 가정형 어린이집(300개소), 국공립어린이집(72개소), 직장어린이집(35개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13개소), 법인·단체, 협동 등(1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어린이집이 전체 842개소 중 48.9%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발생 분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개소수 대비 발생율을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7.77%, 국공립어린이집이 6.94%, 법인 어린이집이 4.35%, 직장어린이집이 2.86%, 가정형어린이집이 2%로 나타났다. 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발생율이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6 피해의심아동 성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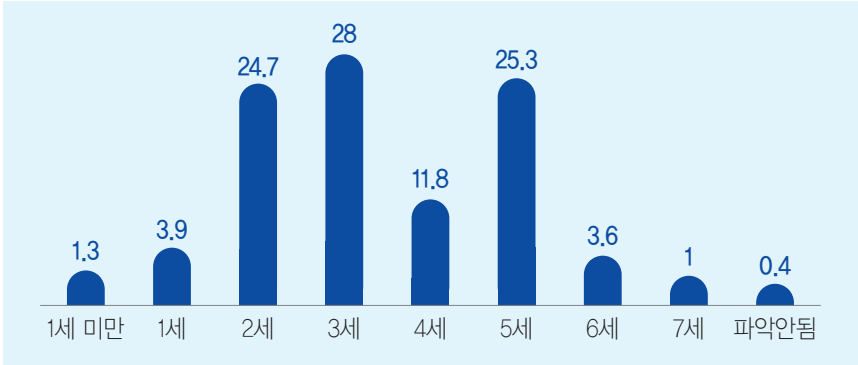
구분	남아	여아	파악안됨	계
건수(비율)	172 (56.6)	131 (43.0)	1 (0.4)	304 (100.0)

[표 6 피해의심아동 성별]

-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남자인 경우가 172건(56.5%), 여자인 경우가 131건 (43.0%)으로 여아보다 남아가 13.5%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악되지 않은 1건은 집단에서 학대행위가 의심되었으나 추가 피해아동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피해아동의 성별의 분포는 남아가 51.8%, 여아가 48.2%로 성별의 차이가 3.6%p로 크지 않은 반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는 남아가 여아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²⁾

2) 권덕철,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 2021.08.

7 피해의심아동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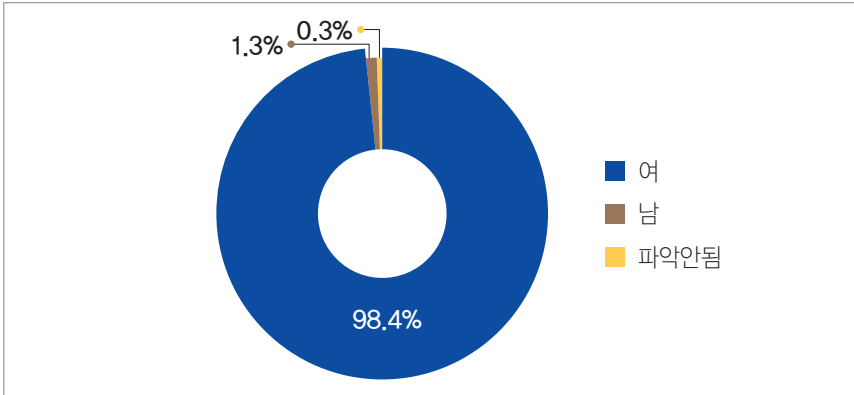
(단위: 명, %)

연령(만)	남아		여아		건수(비율)	
1세 미만	1	(0.6)	3	(2.3)	4	(1.3)
1세	6	(3.5)	6	(4.6)	12	(3.9)
2세	46	(26.7)	29	(22.1)	75	(24.7)
3세	52	(30.2)	33	(25.2)	85	(28.0)
4세	20	(11.6)	16	(12.2)	36	(11.8)
5세	38	(22.1)	39	(29.8)	77	(25.3)
6세	6	(3.5)	5	(3.8)	11	(3.6)
7세	3	(1.8)	0	(0)	3	(1.0)
파악안됨	-				1	(0.4)
계	172	(100)	131	(100)	304	(100.0)

[표 7 피해의심아동 연령별 성별 수]

-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의 연령은 만3세 아동이 85명(2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만5세 77건(25.3%), 만2세 75건(24.7%), 만4세 36건(11.8%)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의심아동 중 남자인 경우 만3세 아동이 52명(30.2%), 만2세 46명(26.7%), 만5세 38명(22.1%)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인 경우 만5세 아동이 39명(29.8%), 만3세 33명(25.2%), 만2세 29명(22.1%) 순으로 나타났다.

8 학대행위의심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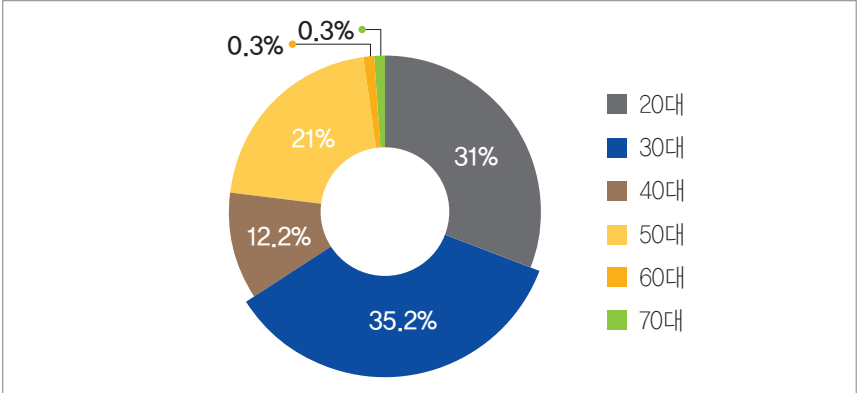
(단위: 건, %)

성별	건	백분율
남	1	0.3
여	299	98.4
파악안됨	4	1.3
소계	304	100.0

[표 8 학대행위의심자 성별]

-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의심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인 경우가 299건(98.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학대행위의심자의 성별이 파악안됨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피해의심아동이 있으나 학대행위의심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다.

9 학대행위의심자 연령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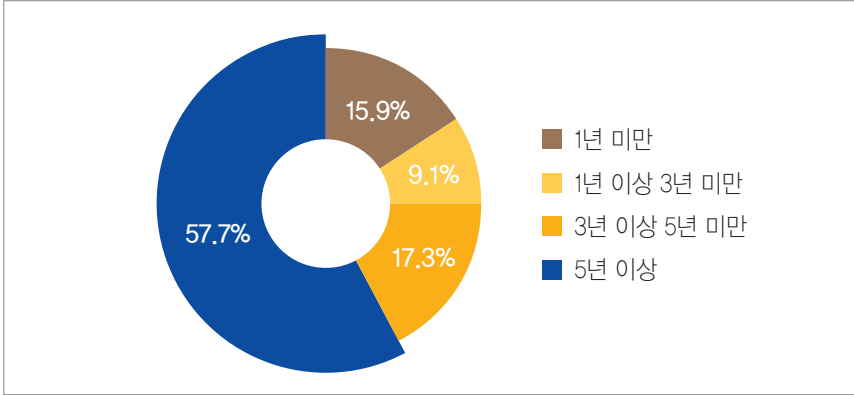
연령	건	백분율
20대	94	31.0
30대	107	35.2
40대	37	12.2
50대	64	21.0
60대	1	0.3
70대	1	0.3
소계	304	100.0

[표 9 학대행위의심자 연령]

-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의심자의 연령은 30대가 107명(3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94명(31.0%), 50대 64명(21.0%), 40대 37명(12.2%)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울산시 아동학대 행위자 연령을 살펴보면 주로 30-40대로 나타났는데³⁾,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주로 20대-30대가 많았다.

3) 이윤정,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울산여성가족개발원), 2021.04.30.

10 학대행위의심자 보육관련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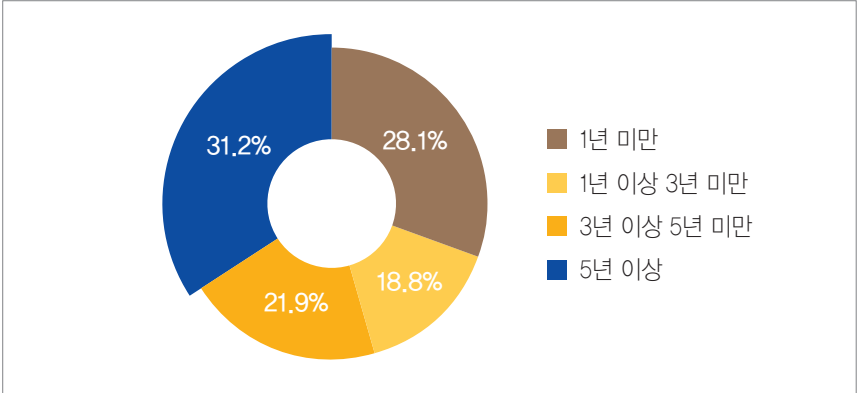
(단위: 건, %)

총 경력	건	백분율
1년 미만	33	15.9
1년 이상~3년 미만	19	9.1
3년 이상~5년 미만	36	17.3
5년 이상	120	57.7
소계	208	100.0

[표 10 학대행위의심자 보육관련 경력]

- 학대행위의심자의 어린이집 근무 총 경력을 살펴봤을 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120건 (57.7%)으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경력이 36건(17.3%), 1년 미만 근무 경력이 33건(15.9%),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경력이 19건(9.1%)순으로 나타났다. 보육관련 총 경력은 근속경력은 아니며 보육교직원 개인의 보육관련 총 경력임을 말한다.

11 학대행위의심자 현원 경력



(단위: 건, %)

총 경력	건	백분율
1년 미만	54	28.1
1년 이상~3년 미만	42	21.9
3년 이상~5년 미만	36	18.8
5년 이상	60	31.2
소계	19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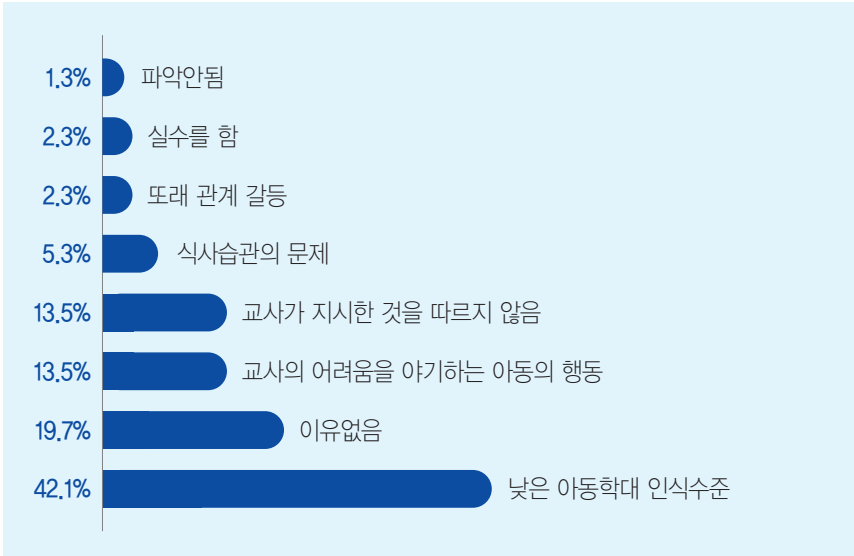
[표 11 학대행위의심자 현원 경력]

- 학대행위의심자의 신고 당시 근무하는 어린이집 근무 경력으로는 5년 이상 60건 (31.2%), 1년 미만 54건(28.1%), 1년 이상 3년 미만 42건(21.9%), 3년 이상 5년 미만 36건 (18.8%)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의심자의 어린이집 현원 경력은 현재 어린이집 근속경력이며 개인 보육관련 총 경력과 다를 수 있다.

※ 10~11 항목은 국가정보시스템의 필수 입력값이 아니며 파악된 사항을 통해 분석하였다.

12 학대발생원인



(단위: 건, %)

학대발생원인	건	백분율
낮은 아동학대 인식수준	128	42.1
이유없음	60	19.7
교사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아동의 행동	41	13.5
교사가 지시한 것을 따르지 않음	41	13.5
식사습관의 문제	16	5.3
또래 관계 갈등	7	2.3
실수를 함	7	2.3
파악안됨	4	1.3
소계	304	100.0

[표 12 학대발생원인]

-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원인의 경우, 낮은 아동학대 인식수준이 128건(42.1%)로 가장 많았으며, 이유없음이 60건(19.7%), 교사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이 41건(13.5%), 교사가 지시한 것을 따르지 않음이 41건(13.5%), 식사습관의 문제 16건(5.3%), 또래관계 갈등 7건(2.3%), 실수를 하는 행동 7건(2.3%)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원인 중 보육교사 요인으로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① 아동학대, 훈육, 체벌의 개념 혼동 ② 아동지도 기술 부족 ③ 온정적이지 않은 태도 ④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또한 어린이집 요인으로는 ① 어린이집 조직문화가 폐쇄적인 경우 ② 업무 과중을 조절하는 조직문화가 없는 경우 ③ 아동문제 지도방안에 대한 어린이집 내 논의 부족 ④ 교사 교육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⁴⁾

13 학대발생 원인에 대한 대처

(단위: 건, %)

내용	건	백분율
부적절한 행동(물건 던지기 등 부적절한 행동 보여주기)	49	16.2
학대행위 부인	39	12.9
신체 체벌	34	11.2
아동과 의사소통(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행동상 문제에 대해 아동과 직접 의사소통)	20	6.6
타보육교사의 훈육으로 학대 방조(타 보육교사 훈육 중 학대행위 의심정황이 있었으나 개입하지 않음)	12	4.0
식사지도 문제(억지로 먹임, 토한 것을 먹임)	11	3.6
보호자 소통(보호자에게 알림)	10	3.3
아동 방치 혹은 무시	10	3.3
부적절한 언어사용	8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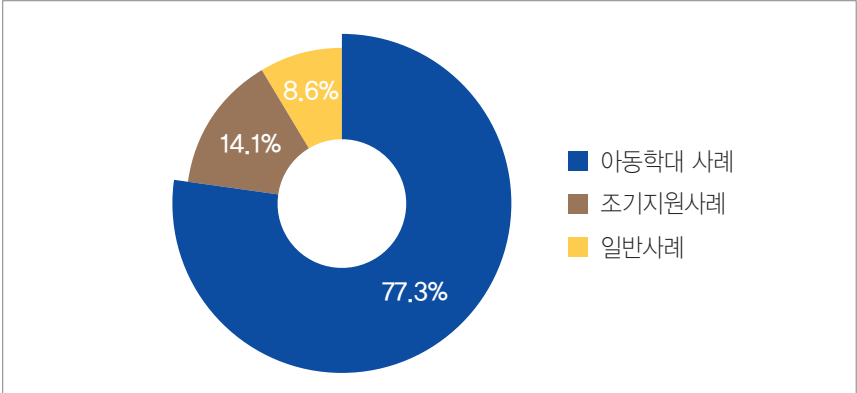
4) 「어린이집아동학대사례 심층분석」,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내용	건	백분율
보육교사 관리 소홀	86	28.2
원장에게 보고(아이문제행동에 대해서 보고, 도움요청)	2	0.6
아동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달래줌	1	0.3
아동이 다른 아동의 손을 포크로 찌르려는 행동에 말로 주의 주고 끝냄	1	0.3
아동이 다치지 않게 살핌	1	0.3
관리소홀	1	0.3
또래와의 갈등 중재	1	0.3
퇴소원아 임에 따라 원내 식판 이용한 점심 제공 실시함, 낮잠시간에는 아동이 평소와 달리 많이 울어서 교구장 앞에 따로 이불을 깔아서 재웠음	1	0.3
기타	17	5.6
소계	304	100.0

[표 13 학대발생 원인에 대한 대처]

-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학대행위의심자의 대처 사항에서는 보육교사 관리 소홀 86건 (28.2%)로 가장 많았으며, 부적절한 행동이 49건(16.2%), 학대행위 부인인 39건(12.9%), 신체 체벌 34건(11.2%), 아동과 의사소통 20건(6.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보육 교사의 훈육으로 아동학대 방조 12건(4.0%), 보호자와 소통 10건(3.3%), 식사지도 문제 11건(3.6%), 아동방치 혹은 무시 10건(3.3%)로 나타났다. 그 외 부적절한 언어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행동으로는 아동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한 부분이며,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이 부적절하였고 하는 행동을 말한다. 자신의 행위가 학대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학대를 부인하며, 자신의 행위를 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신체를 체벌하는 것은 훈육을 하는 과정의 체벌로 인식하며 아동의 행동을 바르게 지도하는 것은 학대가 아닌 훈육으로 간주하고 있다.

14 판단여부 결과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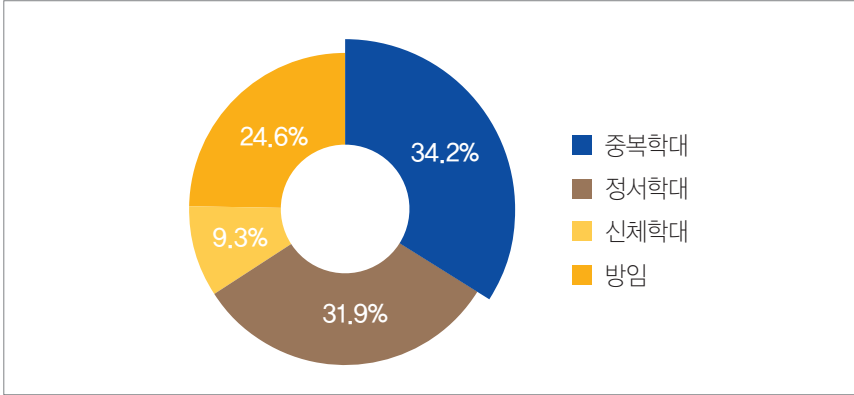
판단여부 결과	건	백분율
아동학대사례	235	77.3
조기지원사례	43	14.1
일반사례	26	8.6
소계	304	100.0

[표 14 아동학대 판단여부 결과]

-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35건(77.3%)이며, 조기지원 43건(14.1%), 일반사례 26건(8.6%)으로 판단되었다.⁵⁾

5) 사례판단유형 : 아동학대사례(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판단된 사례), 조기지원사례(아동학대조사 당시 아동학대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있어 학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례, 2020년 10월 해당 사례판단 삭제됨), 일반사례(아동학대 사례 아님)

14-1 판단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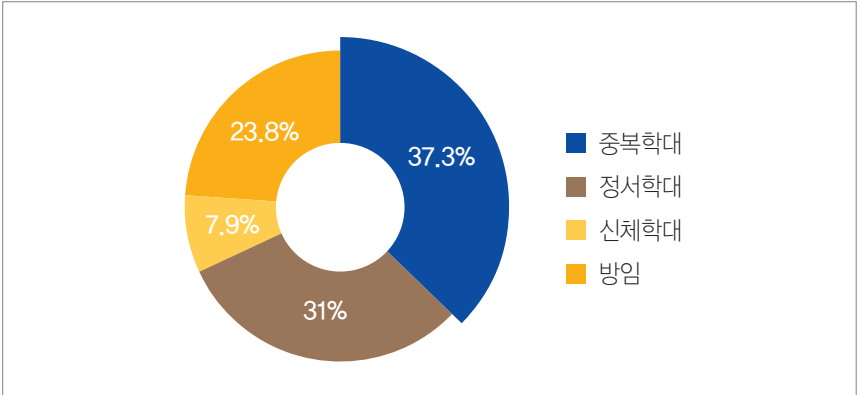
(단위: 건, %)

판단 유형		건	백분율
중복학대	중복(신체+정서+방임등 2개이상판단)	19	8.1
	중복(신체+정서)	49	21.0
	중복(정서+방임)	11	4.7
	중복(신체+방임)	1	0.4
	소계	80	34.2
정서학대		75	31.9
신체학대		22	9.3
방임		58	24.6
합계		235	100.0

[표 14-1 아동학대 판단 유형]

-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중복학대가 80건(34.2%)로 나타나며, 정서학대 75건(31.9%), 방임 58건(24.6%), 신체학대 22건(9.3%),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학대가 포함된 사례는 91건이며 정서학대가 포함된 사례는 154건으로 가정사태에 비하여 어린이집에서는 정서학대가 신체학대보다 빈번하게 나타났다. 또한 방임으로 판단된 사례가 58건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사태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14 -2 판단 유형(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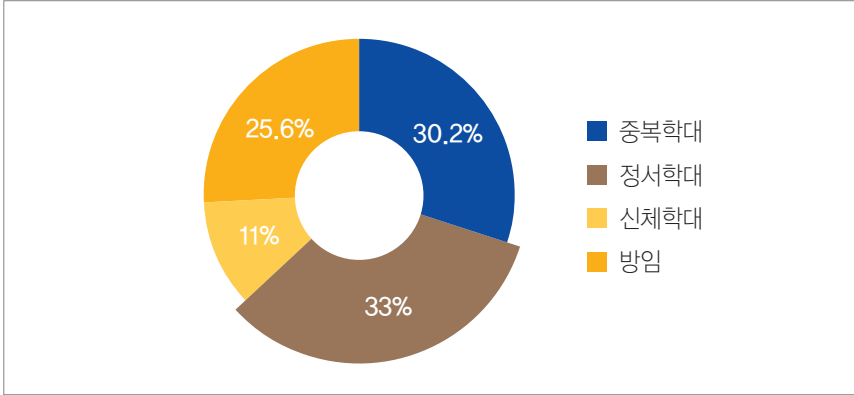
(단위: 건, %)

	판단 유형	건	백분율
중복학대	중복(신체+정서+방임등 2개이상판단)	10	7.9
	중복(신체+정서)	33	26.2
	중복(정서+방임)	3	2.4
	중복(신체+방임)	1	0.8
	소계	47	37.3
	정서학대	39	31.0
	신체학대	10	7.9
	방임	30	23.8
	합계	126	100.0

[표 14-2 남자 아동 아동학대 판단 유형]

- 피해아동이 남자인 경우, 중복학대가 47건(37.3%)를 차지하며, 전체에서 정서학대 39건(31.0%), 신체+정서학대가 33건(26.2%), 방임 30건(23.8%), 신체학대 10건(7.9%) 순으로 나타났다.

14-3 판단 유형(여아)



(단위: 건, %)

판단 유형		건	백분율
중복학대	중복(신체+정서+방임등 2개이상판단)	9	8.3
	중복(신체+정서)	16	14.7
	중복(정서+방임)	8	7.3
	중복(신체+방임)	0	0.0
	소계	33	30.3
	정서학대	36	33.0
	신체학대	12	11.0
	방임	28	25.7
	합계	109	100.0

[표 14-3 여자 아동 아동학대 판단 유형]

- 피해아동이 여자인 경우, 중복학대가 33건(30.3%)를 차지하며, 전체에서 정서학대 36건(33.0%), 방임 28건(25.7%), 신체+정서학대가 16건(14.7%), 신체학대 12건(11.0%), 신체+정서+방임학대가 9건(8.3%)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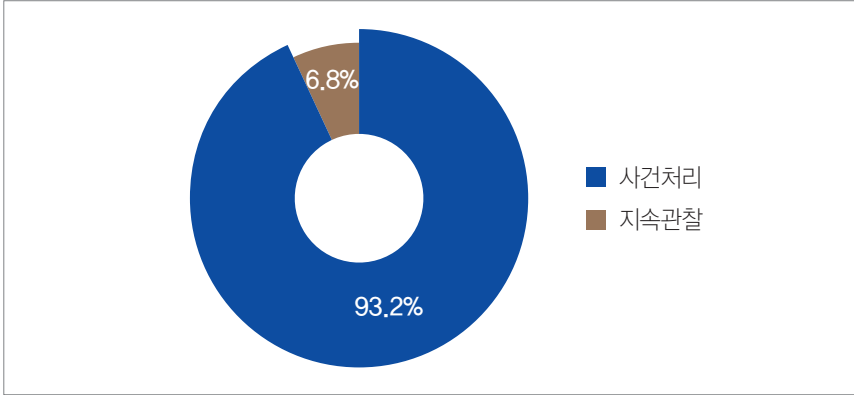
14-4 판단사유

구분	내용
신체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구속, 팔 당김 • 손을 잡아당김 • 신체 체벌(발바닥 때림, 손으로 터치) • 완력 사용(매트리스 잡아 당겨 아동을 넘어지게 함)
정서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행위 노출 • 학대의심정황 봤음에도 묵과 • 비언어적 행동(인상을 씬)으로 공포분위기 조성 • 아동 배제(다른 장소로 이동시킴) • 부적절한 행동(낮잠 시간이 지나도 아동을 깨우지 않고 간식을 챙겨주지 않음) • 비언어적 행동(아동이 특정 음식을 먹지 않으려 하여 손가락으로 그 음식을 아동에게 먹이는 과정에서 아동의 고개가 뒤로 젖히고, 손가락을 입에 넣은 상태에서 털어 넣는 듯한 행동을 함) • 비언어적 행동(식사시간 내 아동이 특정음식을 먹지 않으려 하여 그 음식을 떠서 먹이고, 아동이 뱉으려 하자 음식을 입으로 밀어 넣음) • 우는 아이 달래지 않음(우는 아동을 약40분 가량 교육 목적으로 달래지 않음)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의심정황 봤음에도 묵과 • 타 교사의 학대 행위를 봤음에도 묵과 • 보육 소홀(정규 수업 외 시간에 적절한 보육하지 않음) • 관리 소홀(담임교사의 부적절한 훈육방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표 14-4 아동학대 판단 사유]

-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신체학대는 신체에 완력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노출한 경우로 판단되었다. 정서학대의 경우 부적절한 행동 노출, 수치심 유발, 비언어적 행동으로 공포분위기 조성 등으로 나타났다. 방임은 보육교사의 부적절한 훈육 방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조치하지 않음으로 관리 소홀, 정규수업 외 시간에 적절한 보육하지 않음으로 인한 보육 소홀 등으로 판단되었다.

15 조치유형



(단위: 건, %)

조치유형	건	백분율
사건처리	219	93.2
지속관찰	16	6.8
소계	235	100.0

[표 15 조치유형]

- 아동학대의심으로 신고 이후 아동학대처벌에 대한 특례법으로 사건처리된 경우가 219건(93.2%)이며, 지속관찰의 경우는 16건(6.8%)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에 있어서는 사건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 사건처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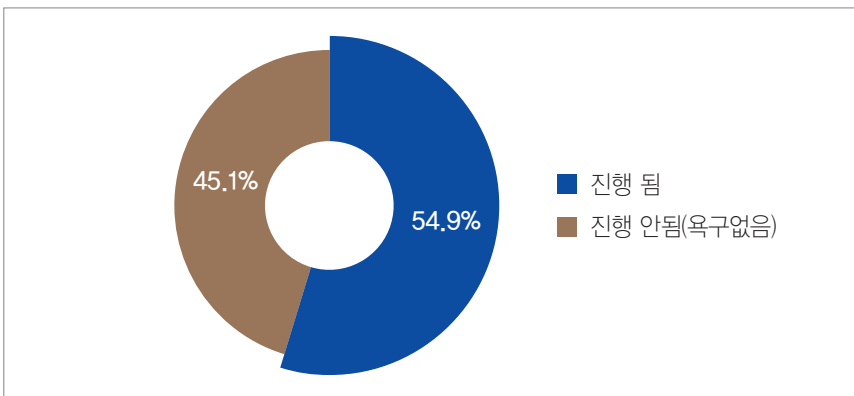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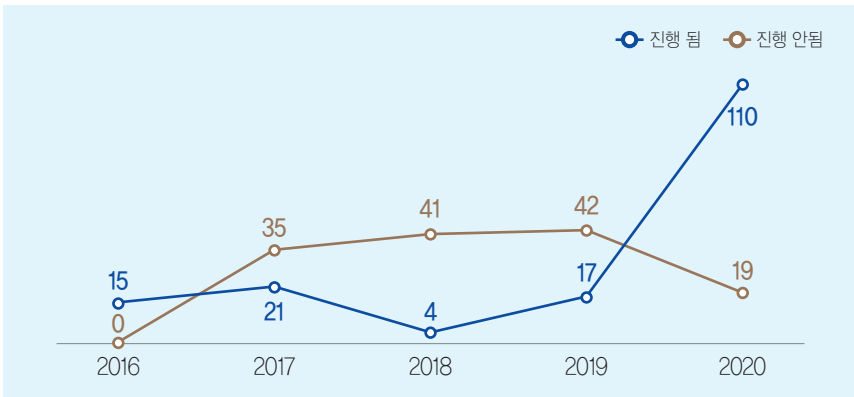
[표 12 학대발생원인]

(단위: 건, %)

사건처리 결과	건	백분율
징역(6개월~2년)	95	43.4
벌금(200~3000만원)	53	24.2
내사종결	7	3.2
불기소	13	5.9
불처분	3	1.4
조건부 기소유예	3	1.4
보호처분(1개월~12개월)	6	2.7
사회봉사	1	0.4
사건, 수사 진행 중	38	17.4
소계	219	100.0

- 아동학대처벌에 대한 특례법으로 사건처리 된 219건 중 형사처벌결정(벌금, 징역)은 148건으로 67.6%로 높게 나타났다. 경찰·검찰·법원 조사 및 집행단계에서 종결되거나, 불기소, 불처분 결정이 되는 사례는 64건으로 29.2%를 보였다. 보호처분결정은 6건으로 2.7%이다.

17 피해의심아동 심리치료 진행여부



(단위: 건, %)

심리치료진행여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	백분율
진행 됨	15	21	4	17	110	167	54.9%
진행 안됨(요구없음)	0	35	41	42	19	137	45.1%
계	15	56	45	59	129	304	100.0%

[표 17 피해의심아동 심리치료 진행여부]

-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단 여부를 떠나 피해아동의 보호자의 요청이나 필요성 여부를 통해 심리치료 진행된 사례는 167건(54.9%), 욕구가 없어 진행되지 않은 사례는 137건(45.1%)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판단 304건 사례 중 심리치료 진행된 사례가 167건으로 54.9%가 심리치료 진행되어 피해아동의 심리정서적인 트라우마를 해소하도록 진행하였다.

III 논의 및 제언

1 자문회의

1차 자문회의	
일 시	2021. 10. 25(수) 14:00
장 소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참여자	울산지역 5개 구군 육아종합지역센터 센터장

내 용

- 현황집에 대한 논의내용은 연도별 발생 건수에 대한 원인 등의 명시 필요, 각 구군별 어린이집 유형별 개소수 표기 시 백분율 표시, 사례집 명칭에 대한 검토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다.
- 영유아 발달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의 재교육, 컨설팅 등의 방법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보육교직원 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실사례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와 더불어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아동학대로 신고 되었을 시 자문변호사 지원 등의 보육교직원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2차 자문회의

일 시	2021. 10. 26(목) 16:00
장 소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참여자	울산시청 아동보호팀 · 구군 보육계 공무원, 학대예방경찰,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추이를 볼 때, 어린이집 CCTV설치 이후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가 신고 이후 CCTV확인을 통해 아동학대로 확인되는 과정이 발생한다. • 어린이집 개소수와 아동학대 발생지역이 비례하지 않은 것은 지역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추후 지역과 어린이집 유형을 추가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다. • 피해아동의 성별이 남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남아의 행동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대한 보육교직원 교육이 특별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별 뿐만 아니라 행동과 발달시기에 따른 발달특성의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져 보육교사가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수행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 근속기간이 5년인, 30~40대 연령의 보육교직원이 많은 것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초점을 맞춘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 •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보육교직원의 신중한 배치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직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공익신고자 보호체계 마련이 아동학대예방과 위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이 어린이집만의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가정(보호자), 전문가, 행정기관 등의 종합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2 제언

○ 이상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황분석 결과 및 자문회의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 보육기관 내부 아동학대예방담당 지정과 신고의무 이행 강화

아동학대 의심신고자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5년간 발생한 304건의 사례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비율은 전체의 30.5%이다. 그 중에서 어린이집보육교사의 신고는 11건으로 3.6%에 불과하다. 전국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2020년 신고의무자 신고율 28.2%)보다 울산지역이 2.3P 높은 편이긴 하지만 보육교사에 의한 신고는 매우 낮다. 이는 동료교사의 그릇된 훈육방식이나 아동학대의심상황을 발견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를 신고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여전히 불편하고 소극적이라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사와의 관계, 어린이집의 근무관계로 인하여 '신고의무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점들은 충분히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예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학대담당인력을 원장뿐만 아니라 교사인을 공동 지정함으로써 원내에서 적극적 대응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모니터링 체계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 이행점검 체계 구축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원인의 경우, '낮은 아동학대 인식 수준'이 128건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하였고, '이유 없음'이 60건으로 19.7%를 보였다. 이는 어린이집에서 평소에 아동학대에 대한 깊은 고찰과 자기모니터링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본 현황집이 제한된 인력과 기간으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추후 후속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인식에 대한 기관의 인식과 개별교사의 인식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혹은 운영관리자의 아동학대인식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해당 자료에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통해 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보들을 수록하였는데, 해당 매뉴얼이 자료로만 남겨질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이행과 실천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실제 사례 중심의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아동인권 중심의 워크샵 필요

매년 2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교육과 신고의무자교육 등 수많은 교육을 이수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좀처럼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반복되는 지식의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보육현장에서 아동과 교사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천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학대행위위험자의 보육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이 보육교직원이 57.6%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학대행위가 더 많은 이유는 ‘교육’의 내용과 활용도를 고민해야하는 부분이다. 학대와 훈육의 경계는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다. 때문에 교사들이 서로의 현장에서 느끼고 마주하는 여러 상황들을 서로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워크샵 형태의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학대에 국한된 교육이 아닌 전반적인 아동권리 이해교육이 필요하기에 아동연령별 권리교육을 기획하는 것도 제안한다.

2022년 울산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조기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윤채원, 강진희

발행기관

울산광역시야동보호전문기관, 울산남부야동보호전문기관

편집위원

이윤미, 박종범, 구경애

인쇄

052 | 260-1870